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2022.09.13 조례 제1603호 다른 조례의 개정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746-5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3.10.30)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3.10.30)

2.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개정 2013.10.30)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삭제 (2013.10.30)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10.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제5조의2(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13.10.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3장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개정 2013.10.30)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3.10.30)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변경(개정 2013.10.30)

2.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민간 등의 각종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 내실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30)

3.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 지원(개정 2013.10.30)

4. 다문화가족 관련 지역단위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30)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신설 2013.10.30)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3.10.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논산경찰서 관련과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련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3.10.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1.6.10.)<개정 2022.9.13.>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개정 2013.10.30)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3.10.30)

4. 결혼이민당사자 또는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개정 2013.10.30)

5.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3.10.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3.10.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0.30)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10.30)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10.30)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개정 2021.6.10.)

제4장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개정 2013.10.30)

제14조(지원시책 추진)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제15조 삭제 (2013.10.30)
제16조 삭제 (2013.10.30)
제17조 삭제 (2013.10.30)
제18조 삭제 (2013.10.30)
제19조 삭제 (2013.10.30)
제20조 삭제 (2013.10.30)
제21조 삭제 (2013.10.30)
제22조 삭제 (2013.10.30)
제23조 삭제 (2013.10.30)

제5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4조(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개정 2011.10.10)

5.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개정 2011.10.10)

6.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0.1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30)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 지정한 센터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⑤ 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위탁・지정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신설 2013.10.30)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비용을 지원한 경우 관련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조신설 2013.10.30)

제24조의3(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장비・비품 그 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조신설 2013.10.30)

제25조 삭제 (2013.10.3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논산시가 위탁운영 중인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로 본다.

부칙<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865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1478호, 2021.6.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인권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복지인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